

장애인 복지 현안 릴레이 칼럼 ②

자립을 넘어 자주로

: 장애인복지 실천의 방향 전환에 대한 제언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정호영 관장

1. 자립 담론의 이중성: 사람을 살리기도, 몰아붙이기도 하는 언어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자립”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핵심 가치처럼 사용되어 왔다. 자립은 분명 중요한 목표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보다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자립은 인간의 존엄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은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보여준다. 자립이라는 말은 맥락과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언제까지 의존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겉으로는 자립을 촉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조건과 삶의 맥락을 지워버린 채 ‘정상성의 기준’을 강요하는 언어로 작동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의 이름을 빌린 또 다른 평가와 통제가 될 위험이 있다. 사회복지 실천은 인간을 특정 기준에 맞추어 재단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각자의 삶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존엄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자립이라는 개념은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2. 자립에서 자주로: 실천 개념의 전환 필요성

자립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것’이라면, 자주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둘은 유사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립은 능력의 문제로 귀결되기 쉽지만, 자주는 권리와 관계의 문제다.

모든 사람이 완전한 자립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의 정도, 건강 상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자립의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주는 다르다. 자주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가치이며, 사회복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자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혼자 살고 있더라도 삶의 중요한 결정이 타인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 삶은 자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은 ‘자립 가능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삶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3. 탈시설화의 재해석: 공간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

탈시설화는 오랫동안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물론 물리적 공간의 변화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설을 떠났다고 해서 곧바로 자주적인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의 방식이다. 시설화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대신해 주는 구조’에 있다.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결정들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당사자는 그 결정에 따르는 존재로 머무를 때, 그곳이 어디든 시설화는 존재한다.

이는 일종의 구조적 의존을 만들어낸다. 반복되는 대행과 과잉 보호는 당사자의 선택 경험을 줄이고, 결국 자기 삶에 대한 주도권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상태는 단순한 도움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진정한 탈시설화는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재구성이다.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삶의 방향을 정하는가”라는 질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4. 자립지원의 실천 원칙: 주체성을 회복하는 구조 만들기

자립지원이 자주를 중심에 두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원칙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 실천 속에서 반복되어야 하는 기준이다.

- 첫째, 당사자의 일은 당사자의 일이게 해야 한다.
- 둘째, ‘할 수 있는 만큼’ 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 셋째, 필요한 만큼만 지원해야 한다.
- 넷째,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

5. 기관문화로서의 자립지원: 개인을 넘어 구조로

자립지원은 개별 사회복지사의 태도에만 의존해서는 지속될 수 없다. 조직 전체의 철학과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운영 규정, 서비스 매뉴얼, 평가 기준 등에 자주 중심의 원칙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신하지 않는다”, “모든 지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와 같은 기준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사결정 구조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직원 교육과 슈퍼비전 과정에서도 이러한 가치가 반복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개인의 실천은 쉽게 한계에 부딪힌다. 반대로 조직이 방향을 명확히 하면, 개인의 실천은 자연스럽게 정렬된다. 결국 자립지원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문화의 문제다.

6. 결론: 자립의 목표를 다시 묻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혼자 사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의존적 존재이며, 누구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도움의 유무가 아니라, 그 도움 속에서 주체성이 유지되는가이다.

자립지원의 궁극적 목적은 ‘함께 살아가되,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인간에 대한 관점과 사회적 가치의 문제로 이어진다.

사회복지는 사람을 대신 살아주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건과 관계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을 때, 자립이라는 말은 더 이상 사람을 압박하는 언어가 아니라, 삶을 확장시키는 언어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